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·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「보건의료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20922호, 2025. 4. 17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, 수급추계 참고자료 등 공개대상, 수급추계 방법 및 주기, 위원 임기 및 해촉, 위원장의 직무, 위원회의 간사, 회의 및 의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제정안, 별첨

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23조의2제12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,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심의사항) 「보건의료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3조의2제2항제3호에서 “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”이란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사, 치과 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.

제3조(공개대상이 되는 자료) 법 제23조의2제10항에서 “그 밖에 수급추계에 활용한 참고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수급추계에 활용한 모형·가정·변수 및 이에 관한 통계로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의결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.

제4조(수급추계 방법 및 주기) ① 수급추계 모형·가정·변수 등 수급추계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② 수급추계는 직종별로 5년마다 실시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

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제7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3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7조(비밀유지)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 간 합의에 기반하여 수급추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3조의2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자

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의 장으로 한다.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분과위원회)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2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)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·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,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, 관계 기관·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(운영 세칙)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(시행 시점) 법률 제20922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법 제22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의 경우 다

음 각 목에 따른 시점

가. 치과 의사 및 간호사의 경우 : 2027년 1월 1일

나. 한의사, 약사 및 한약사의 경우 : 2028년 1월 1일

다. 의료기사의 경우 : 2029년 1월 1일

2. 법 제2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의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의 경우 : 2027년 1월 1일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